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

의안 번호	89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8. 2 .14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 ·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나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,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이 가능하며,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, 최소 6명 이상으로 한다.(안 제5조).
- 라.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(안 제9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·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본예산 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1. 24 ~ 2. 13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기 타 : 200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('08.1.24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**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·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명칭)**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센터의 명칭은 “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” 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·상담 및 치료
2.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
3.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
4.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
5.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
6. 한부모가족지원사업
7.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

8.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

**제4조(시설)**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·상담실·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5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,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, 가정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운영)**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통신망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원봉사자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,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강사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

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.

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)**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)** ① 위탁운영 할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.

④ 위원은 가정분야, 복지분야, 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하되,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
**제11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탁·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2조(주민참여)**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지도감독)**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지원)**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·운영이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5조 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(이하 "건강 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05.3.24>

④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24>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

[일부개정 2005.6.23 대통령령 제18873호]

제14조 (시·도 및 시·군·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, 가정교육팀,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.

②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

[일부개정 2007.9.10 보건복지부령 제302호]

제6조 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.
2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